

5. 建設業分野 規制緩和 方案

(重點改善課題)

資料提供：建設部

I. 總 合

1. 제도현황 및 문제점

가. 국민경제상 건설업의 비중

- 건설업의 생산액은 GDP의 13% 내외를 차지하며 건설투자도 23%로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

구 분	'90	'91	'92	'93
건설업 부가가치 생산액(십억원)	20,737	30,035	32,871	36,228
GDP비중(%)	(11.5)	(13.9)	(13.7)	(13.6)
건설투자액(십억원)	39,605	51,959	56,291	62,037
GDP비중(%)	(22.1)	(24.1)	(23.4)	(23.4)
건설업종사자(천명)	1,339	1,543	1,652	1,680
전산업비중(%)	(8.4)	(8.3)	(8.7)	(8.7)

나. 건설업제도 일반현황

○ 건설업은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건설업법 및 각 개별법에 의해 면허·허가·등록·지정 등의 시공자격제도를 두고 있으며,

- 건설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하여는 성실시공과 발주자 보호, 도급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체 보호 등을 목적으로 건설업법 및 각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음.

국내건설 시공자격 제도

구 분	규제형태	허 가 권 자	근 거 법 령
○ 건설업 • 일반건설업 • 특수건설업 • 전문건설업	면 허	건설부장관 " 시·도지사	건설업법
○ 전기공사업 ○ 전기통신공사업 ○ 문화재수리업 ○ 소방설비공사업 ○ 환경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업	면 허 허 가 등 록 면 허 등 록	상공자원부장관 체신부장관 문화부장관 내무부장관 환경처장관	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문화재보호법 소 방 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
○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○ 분뇨처리시설 ○ 오수정화시설 ○ 정화조시설 ○ 축산폐수시설 ○ 주택건설업 ○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업	등 록 등 록 지 정 등 록 지 정	환경처장관 환경처장관 건설부장관 시·도지사 상공자원부장관	폐기물관리법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" 에너지이용합리화법

다. 건설업법상 건설업제도

(1) 건설업 면허관리

○ 건설업의 구분 및 업종

- 일반건설업 : 토목, 건축, 토목건축공사업 등 3개 업종
- 특수건설업 : 철강재, 준설, 포장, 조경공사업 등 4개 업종
- 전문건설업 : 의장, 토공, 미장·방수, 석공 등 19개 업종

※ 건설업면허 현황('94. 4. 30 현재)

일반건설업	특수건설업	전문건설업	계
1,606	634	11,633	13,873

- 건설업면허 및 갱신 : 매년 1회 면허실시, 5년마다 면허 갱신

(2) 건설공사 관리 및 발주자 보호

○ 건설공사 도급에 대한 제한

- 건설업자는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음.

○ 건설공사 시공관리

-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공사현장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

○ 일괄하도급 금지

-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음

(3) 중소 전문건설업체 보호 및 하도급관리

○ 면허의 중복취득 제한

- 일반건설업 또는 특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중복취득을 금지

○ 소규모 복합공사의 전문건설업체 수주 허용

- 일정규모(6천만원)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

○ 일정비율의 전문공사 하도급의무

- 5억원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그중 일정비율의 전문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

○ 하도급대금 직불제

-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부도 등으로 지불능력을 상실할 때 발주자가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

라. 문제점

- 건설업 및 관련공사 시공업에 대한 관리업무가 여러 개의 법률에 의해 건설부, 상공자원부, 체신부 등 여러 부처로 다원화되어 있어,
 - 하나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공종별로 도급·하도급 규정,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,
 - 건설업체로서도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
- 건설업 면허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신규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, 토목·건축공사 및 특수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수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수건설업면허를 별도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 경쟁제한 요소가 되고 있음

2. 규제완화내용

가. 기본 방향

- 건설업제도는 건설공사의 성실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내로 규제하고, 건설업자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유도
- 건설업법령상 건설업에 대한 규제내용중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
- 건설공사에 관한 시공자의 자격 및 관리제도 등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

나.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

(1) 개요

구 분	대 상 과 제	완 료 과 제	추 진 과 제
계	15	8	7
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	11	6	5
행정쇄신위원회	4	2	2

(2) 주요 조치완료 사항

- 건설업면허주기 단축 및 갱신주기 연장('94. 1. 7)
 - 건설업면허를 매3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여 건설업신규참여 기회를 확대함
 - 건설업면허는 3년마다 갱신하던 것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
- 건설업법 적용을 받지않는 경미한 공사규모 상향조정('93. 6. 26)
 - 건설업면허 없이도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를 일반공사인 경우 2천만원에서 3천만원, 전문공사인 경우 5백만원에서 7백만원 미만의 공사로 상향조정
- 도급한도액 적용범위 축소('94. 1. 7)
 -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정부투자기관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(PQ)에 의하여 발주한 공사인 경우 도급한도액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
 - ※예산회계법령상 PQ제 적용대상공사 : 100억원이상 14개공종
- 하도급대금 직불범위 확대('93. 6. 26)
 - 공공부문 공사로서 예정가격의 85%미만으로 도급받은 공사중 하도급공사의 대금은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
- 건설공사 착공신고제도 폐지('94. 1. 7)
 - 5억원이상 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시·도지사에서 신고하던 것을 폐지함
- 건설업면허수첩 기재업무 민간단체 위탁('93. 6. 26)
 - 건설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건설공사 도급한도액 및 도급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후 건설업면허수첩에 이를 기재하던 것을 각 건설협회가 기재하도록 위탁함

다. 금번 규제완화 내용

(1) 건설업면허 관리제도 개선

○ 건설업면허기준 완화('94. 8)

- 기술인력(건설분야 기술자) 보유기준

- 토목, 건축공사업 : 8인→4인
- 토목건축공사업 : 20인(기술사 1인)→10인(기술사삭제)
- 특수건설업 : 10인(기술사 1~2인)→5인(기술사삭제)
- 전문건설업 : 5인(기능사 3인)→3인(기능사 2인)

- 시설기준중 포지(圃地)보유기준

- 조경공사업 : 198,000㎡→100,000㎡
- 조경식재공사업 : 99,000㎡→50,000㎡

○ 포장공사업면허제 폐지('94. 8)

- 도로공사중 포장공사는 토목공사업면허와 포장공사업면허를 함께 보유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던 것을 이중 포장공사업면허제를 폐지하여 토목공사업면허만 받으면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함

(2) 건설공사 관리 및 발주자 보호제도 개선

○ 건설공사현장 기술자배치기준 완화('94. 8)

- 공사금액 200억원이상 공사 : 기술사만을 배치할 수 있던 것을 기사 1급으로서 실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함. 단 300억원이상의 교량·터널·댐 등 주요시설의 공사 현장에만 기술사를 배치토록 함

-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공사 : 기사 1급으로서 실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하던 것을 기사 1급으로서 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.

- 기사 1급 배치 대상공사 : 공사금액 10억원이상 → 20억원이상

- 기사 2급 배치 대상공사 : 공사금액 10억원미만 → 20억원미만

- 기술자 대신 기능사를 배치할 수 있는 전문공사(신설)

- 미장, 방수, 석공, 도장, 조적, 창호공사로서 2억원미만
- 기타 전문공사로서 1억원미만
-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로서 3억원미만

○ 농어촌지역 건축물 시공자격제한 완화('94. 8)

— 시 또는 읍지역에서 농·축·임·어업용으로 연면적 495㎡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업자에게 이를 도급하여 시공하여야 하나,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도 농어민이 영농시설물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함.

(3) 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하도급관리제도 개선

○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소규모복합공사 규모조정('94. 8)

— 전문건설업자는 해당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을 수 있으나, 예외적으로 6천만원미만의 소규모복합공사는 도급받을 수 있던 것을 7천만원미만의 공사로 상향조정

○ 하도급의무 대상공사의 범위 축소

— 공사금액 5억원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일정비율(20~30%)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, 그 대상공사의 규모를 7억원이상의 건설공사로 상향조정

○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제한 완화('94. 8)

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으나, 설계·시공 일괄 발주공사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시공부분의 전부를 2인이상의 건설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것을 허용

○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절차 간소화('94. 8)

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하수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지급독촉을 거친 후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요청할 수 있던 것을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

○ 하도급공사 기성실적증명 간소화('94. 8)

— 하도급공사의 기성실적증명서는 수급인만 발행할 수 있던 것을 발주자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함

○ 하도급계약체결 통보방법 개선(전경련 건의사항, '94. 7)

— 건설업법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사실을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계속 공사는 관행상 하도급 통지를 매 년차별로 하고 있으나, 이를 계약체결시 한번만 하

면 되도록 시정함.

(4) 장기과제로 추진할 사항

○ 건설공사 시공자격 관련법규 및 관할기관의 단순화(전경련 건의)

- 관련법규 및 관할기관을 일원화하는 경우 건설업자나 발주자의 불편은 해소될 수 있으나, 관련업계나 관계기관간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추진

○ 건설업체의 협회가입 자유화(전경련 건의)

- 협회의 설립과 가입을 자유화할 경우 업계의 이해조정(서울과 지방, 대기업과 중소기업)이나 업체간의 분쟁조정이 어렵게 되는 면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장기과제로 검토

잘 지은 건물하나 평생동안 나의 명함